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41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박준태·고동진·백종헌

김선교 • 강대식 • 박정하

구자근 • 박충권 • 김상욱

조배숙 • 곽규택 • 장동혁

주진우 · 김용태 · 이상휘

김장겸 의원(16인)

제안이유

2015년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한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함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신속히 파산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파산채무자의 생계에 사용하는 영업용 필수재산을 채무자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단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파산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사전 채권자목록 제출(안 제293조의4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6항)

간이회생절차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별도의 목록제출기 간 부여 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나. 간이회생절차 법정 소요기간 단축(안 제293조의제5조제5항 신설) 간이회생 개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50조제1항의 절차 단계별 최 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 기 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다. 급여소득자 등 간이회생절차 신청권자 확대(안 제293조의2제2호 및 제3호)

현재 채무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로 한정된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급여소득자에게도 확대

- 라.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안 제594조의2 신설)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중 파산으로 진행할 사건의 경우 '개인회생절 차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단계에서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유지한 채 파산절차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 마. 영업용 필수재산이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안 제383조 제2항제3호 신설)

채무자의 영업용 필수재산을 채무자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파 산재단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법률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3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소액영업소득자"란"을 ""소액영업소득자 등"이란"으로, "영업소득자를"을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를"로 한다.

- 2.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제293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제14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제1호의 목록이 제출된 때에는 제147조제1항의 목록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 ⑥ 제147조제4항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93조의5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정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제38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영 업용 차량, 도구, 재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579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급여소득자"란 제293조의2제2호의 자를 의미한다.
- 3. "영업소득자"란 제293조의2제1호의 자를 의미한다.

제5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94조의2(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파산신청으로의 전환)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파산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592조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전환의 효 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던 때에 파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589조에 의한 신청서류, 제590조에 의한 비용의 예납은 파산신청을 위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의 전환에 따라 종료되는 제593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의

한 중지 또는 금지는 파산선고 여부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
	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
	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2. <u>"소액영업소득자"란</u> 회생절	3. "소액영업소득자 등"이란 -
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	
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u>영업</u>	<u>형</u>
<u>소득자를</u> 말한다.	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를
	<u>.</u>
<u>3</u> . (생 략)	<u>4</u> .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 ③ (생 략)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	4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u>1. 채권자목록</u>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제1

2. ~ 4. (생 략) <신 설>

<신 설>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 하는 재산) ① (생 략)
 -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 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 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4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 4. (현행과 같음)
- ⑤ 제4항제1호의 목록이 제출된 때에는 제147조제1항의 목록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 ⑥ 제147조제4항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간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정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 (현행과 같음)
 - 2-----

 - _____
 - 1. 2. (현행과 같음)
 - 3.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영업용 차량, 도구, 재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③ ~ ⑩ (생 략)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 1. (생략)
-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 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 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 다.

4. (생략)

<신 설>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재산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 제579조(용어의 정의) -----

----**.**

- 1. (현행과 같음)
- 2. "급여소득자"란 제293조의2제2호의 자를 의미한다.

3. "영업소득자"란 제293조의2 제1호의 자를 의미한다.

4. (현행과 같음)

제594조의2(개인회생절차개시신 청의 파산신청으로의 전환)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는 법원에 개 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파산신

청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 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 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592조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에 의한 중지 또는 금 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던 때에 파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제589조에 의한 신청서류, 제590조에 의한 비용의 예납은 파산신청을 위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의 전환에 따라 종료 되는 제593조제1항제2호·제4 호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는 파산선고 여부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